

정기 종합감사

2018.5.10 ~ 18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8. 7.

금 용 위 원 회

#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	1
II.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연도별 수입·지출예산 및 결산 .....	3
III.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21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22

## I. 감사실시 개요

---

### 법적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감독 등)

※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5. 12월 실시

### 감사기간 : 2018. 5. 10(목) ~ 5. 18(금), 7일간(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의사결정기구,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서민금융과 1명, 금융감독원 1명, 회계기준원 1명 지원 포함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채무조정, 소액금융, 교육·상담 등 업무 처리실태
- 총회·이사회 등 의결기구 운영의 충실성
- 예산, 계약사무, 회계처리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 준수여부
- 내부통제의 실효성 등

## II.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 1. 일반현황

#### □ 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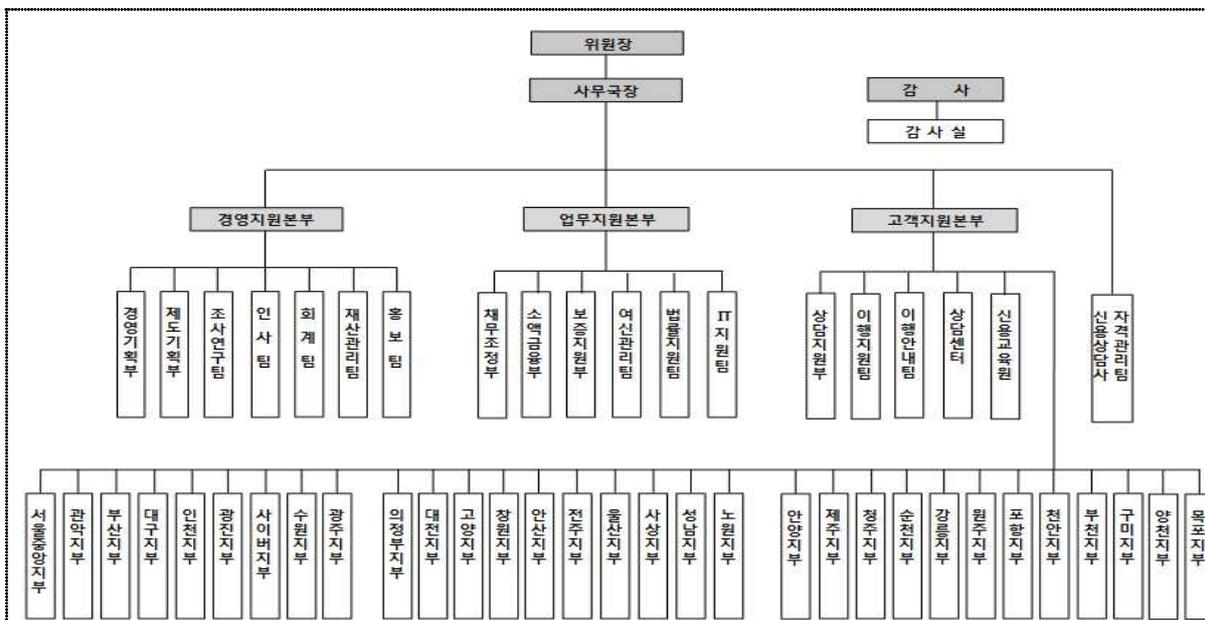
- 2002.10.1.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비영리 단체)
- 2003.11.1. 금융위원회 설립허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출범
- 2016.9.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기구로 전환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7층

□ 조직 및 인원 : 3본부 6부(11팀 1실 1원 1센터), 전국 31지부 (264명, 17년말 기준)

- \* 위원장(상근) : 김윤영(55년생) / 서울대(지질), 수출입은행 부행장, 캠프 이사
- 감사(비상근) : 정성구(72년생) / 美콜롬비아대(법학),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신용회복위원회 조직도>



## 2.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	2016	2017
신용회복상담(건)	485,554	485,481	474,802
채무조정(확정/신청, 명)	77,757/91,520 (85.0%)	81,401/96,319 (84.5%)	89,087/103,277 (86.3%)
신용교육(명)	236,391	201,846	189,502
소액금융(건/억원)	22,787/755	19,908/639	20,381/655
보증지원(건/억원)	20,307/748	19,440/589	21,189/613
취업지원*(명)	3,813	3,853	-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 이관('16년말)

## 3. 연도별 수입·지출예산 및 결산

### □ 2016년~2018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결산

	2016		2017		2018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총액(억원)	416	404	454	410	493	-
사원분담금	335	321	404	327	440	-
전입금수입	0	0	0	0	0	-
전기이월금	21	24	0	29	0	-
신청금	60	53	50	54	53	-
잡수입	0	6	0	0	0	-
지출총액(억원)	416	404	454	410	493	-
인건비	181	180	207	197	227	-
자산취득비	9	22	22	22	21	-
경상경비	184	184	189	176	214	-
전산업무비	16	18	16	15	19	-
예비비	26	0	20	0	12	-

□ 2015년~2017년도 재무상태(B/S)

(단위 : 억원)

	과목별	2015	2016	2017
자산	유동자산(예금등)	763	731	1,075
	금융자산(대출채권등)	862	834	810
	유형자산(집기등)	47	57	63
	<b>계</b>	<b>1,672</b>	<b>1,622</b>	<b>1,948</b>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71	85	104
	예수금·미지급금 등	559	541	698
	<b>소계(A)</b>	<b>630</b>	<b>626</b>	<b>802</b>
자본	잉여금처분	21	0	0
	유형자산순액	47	57	65
	임의적립금	0	0	0
	미처분잉여금	39	17	△20
	출연금(사업재원) <sup>1)</sup>	935	922	1,101
	<b>소계(B)</b>	<b>1,042</b>	<b>996</b>	<b>1,146</b>
	<b>합계(A+B)</b>	<b>1,672</b>	<b>1,622</b>	<b>1,948</b>

1) 특별회계(소액금융 및 신용보증) 출연금(사업재원)

### III. 감사실시 결과

#### 1 분야별 감사결과

#### 가 인사/보수제도 및 운용관련

##### ① 채용방식 다양화 및 외부 면접위원 참여 확대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연도별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15년부터 총 5회의 공개경쟁전형을 거쳐 총 59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18.4월말 기준, 직원 총 274명)
- 추가적으로 안정적 상담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2020년까지 총 57명('18하반기 10명, '19년 24명, '20년 23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채용대상이 경력직은 없고 신입직원에 치중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유사한 연령 및 경력의 직원들이 일시에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경우 인력관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
- 또한, 각 면접전형별 심사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18년도 1차 면접시험에만 외부위원이 참석하고 있을 뿐, 2차 면접시험에는 내부직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등 외부위원의 참여 미흡

<'15년이후 신입 직원(정규직) 공개채용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상	하	상
채용인원	12명	12명	12명	9명	14명
평균연령*	-	만 28.1세	만 27.3세		만 26.6세
채용대상	신입직원	신입직원	신입직원	신입직원	신입직원
면접위원 (명)	1차(내부 4) 2차(내부 4)	1차(내부 4) 2차(내부 4)	1차(내부 4) 2차(내부 4)	1차(내부 4) 2차(내부 4)	1차(내부 5, 외부 5) 2차(내부 4)
퇴직자	8명	1명	2명	4명	2명

\* '18.6.30.기준

⇒ 향후 경력직 채용 등 채용방식 다양화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면접위원 참여 확대 등 공개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통보)

## ② 신복위 사무국장 및 본부장 보수결정과정 투명성 제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제31조에 따라 사무국장 1인을 두도록 하고, 「본부장제 운영규정」 등 따라 3인의 본부장\*을 두도록 하면서, 각각 임기를 2년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본부장 3인 : 경영지원본부장, 업무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사무국장 겸임)

- 한편, 「보수규정」 제4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보수는 고용계약서상의 기본급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무국장 보수의 경우는 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본부장의 경우는 「본부장제 운영규정」 제8조에서 단순히 위원장이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결과,

- 사무국장과 본부장의 경우 법인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실상 집행임원 성격의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전적으로 보수(연봉)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 향후 보수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본부장의 보수는 이사회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할 필요 (통보)

## ③ 신용상담 기능강화 등을 위한 조직 보강 등 조치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영문조직명(CCRS :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에서 신용상담을 주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비전도 「채무상담종합센터」로 제시하는 등 신용상담을 주요한 업무로 삼아 수행중이며

- 매년 사업계획서상 경영목표로 상담기능 강화 및 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신용상담 업무를 지속 개선하고자 노력중

<신용회복위원회 사업계획서상 경영목표>

연도	구분	목표명
2015	경영목표	채무상담종합센터로서의 위상 확립
2016	경영목표	서민금융 종합상담 체계 구축
2017	경영목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의 실효성 강화
2018	경영목표	신용상담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확대

- 그러나, 상담지원부가 상담기능 관련 총괄부서이나 인력이 2명(부장1, 선임1)에 불과하여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 업무분장 조항에 상담 품질·기능강화 및 관련 조사·연구 등에 관한 항목이 없고 상담 업무 품질 관리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는 등 상담품질 강화 및 개선을 위한 체계 수립 상황도 미흡

\* 총 87개 신복위 제규정 중 상담 품질·기능강화 관련 규정은 없고, 'CS운영지침'은 있으나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지침에 불과

<직제규정상 상담지원부 업무분장 사항>

제 19조(상담지원부) 상담지원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1. 지부간 업무협조 및 지부 지원에 관한 사항
2. CS(고객지원)업무의 총괄 및 CS리더의 양성
3. 지부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업무개선 건의, 칭찬 및 불편신고 등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과중채무자의 취업 관련 상담 및 구직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
6. 구인업체 발굴에 관한 사항
7. 취업지원관련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업지원관련 기획·행사·외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사항

⇒ 체계적인 상담 품질개선·기능강화를 위해 인력확충, 조직 및 규정 정비 등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할 필요 (통보)

## 나 예산 집행/회계처리

### ① 예산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제18조제1항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직무전결규정 제4조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과목에 한하여 위원장 전결로 예산을 전용하도록 규정

※ 인건비, 복리후생비로의 예산 전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의결 사항

- 신용회복위원회는 '15년부터 '17년까지 총 21건('15년 8건, '16년 8건, '17년 5건)의 예산전용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15년도의 '백신(V3) 라이선스 기간 3년 연장 사업' 및 '17년도의 '전자팩스 업그레이드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사업연도 예산에 동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 전용을 통하여 집행\*

\* 백신(V3) 라이선스 기간 연장사업은 '월세'에서 '전산소프트웨어'로 46,508천원 전용하고, 전자팩스 업그레이드 사업은 '유지보수료'에서 '전산소프트웨어'로 14,000천원 전용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위원회 의결없이 예산전용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

⇒ 당초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전용을 통해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기관주의)

### ② 해외연수제도 개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출장·여비지급지침」 별표 3에서 체재비를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출장 중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숙박비를 숙박 일수가 아닌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 상·하급 직원이 동반 출장하는 경우에 하급직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만 상급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미국 및 영국 출장시 하급 직원의 일비까지 상급 직원의 기준으로 지급하였음
- \* 출장·여비 지급 지침 제8조(동반 출장시 여비) 상·하급 직원이 동반 출장하는 경우에 하급직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상급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준용한다
- '16.07.21.과 '17.07.27. 각각 영국 출장 일정이 미정인 채로 해외 연수 실시함에 따라, 동일 면담자를 2일에 걸쳐 각 1시간씩 면담\*하거나, 런던 소재 2개 기관을 2일에 걸쳐 각 2시간 이내 면담\*\*
- \* CAB 본사의 Dr. Pilla Lane을 9.21일, 9.22일 각 1시간씩(10:00~11:00) 면담
- \*\* 10.17일 09:00~11:00 런던 소재 MAS(Money Advice Service; 신용상담서비스) 방문, 10.18일 09:30~11:00 런던 소재 MAT(Money Advice Trust; 신용상담기금) 방문
- 그 외 '16년 일본 해외 연수의 경우, 당초 계획된 사법지원센터 등 1~2곳은 협의 차질로 방문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음
- 대부분의 해외 연수시 현지 도착일 이후에 지역 답사 및 사전 준비로 1일, 면담 자료 정리로 1~2일을 체류\*
- \* '16년 미국 출장시 자료 정리에 1일, 영국 출장시 사전 준비 1일, 자료정리 1일, 일본 출장시 사전 준비 1일, '17년 영국 출장시 사전 준비 1일, 자료 정리 2일, 호주 출장시 사전 준비 1일, 자료 정리 1일을 체류
- 해외 연수 사전 준비를 보다 면밀히 하고, 국내에 도착하여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 및 자료 정리에 1~2일을 할애하는 것은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해외 연수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부적합

- 또한, 「출장·여비지급지침」 제23조(기타경비)\*에 근거하여 '16년~'17년 중 총 6건의 해외 연수시 통역비로 7,707,946원을 지출

\* 기타경비는 업무추진비, 업무에 관련된 도서구입비 등 기타 특수비용을 말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내실 있는 해외 연수 성과의 도출을 위해 출장시 통역비 지급이 필요한 점도 인정될 수 있으나, 명확한 지급 근거 없이 운영될 경우 통역비가 본래 연수 목적에 부합하게 지급·사용되지 않거나, 연수 일정 대비 과도하게 지출될 우려

⇒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출장여비 지침, 철저한 사전 해외연수계획 수립, 불필요한 출장일정 제거 및 통역비 지급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개선요구)

### ③ 업무용 차량 및 운전대행서비스 운용관련 개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차량운영지침」 제4조는 업무로 인하여 차량을 사용하거나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배차승인신청서 작성 및 사전 배차승인을 받아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후의 운영을 금지한다고 규정
- 그러나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 8대 중 3대를 사무국장 및 본부장에게 전용차량으로 지원하여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등 상기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 전용차량 배정 현황 >

사용자(직위)	차종	월 임차료(원)	비고
사무국장	그랜저 IG	938,000	
경영지원본부장	쏘나타 뉴라이즈	617,100	
업무지원본부장	LF 쏘나타	648,600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16. 11. 25. 주식회사 핸들포유와 “운전대행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6.12.29. ~ '18.03.31. 기간 중 152회 운전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요금으로 총 5,121,300원을 지출
- 그러나 운전대행서비스의 이용목적, 이용가능시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될 우려

⇒ 업무용 차량 운행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전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운전대행서비스 이용관련 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개선요구)

#### ④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부적정

- 신용회복위원회 예산집행지침 제13조 제1항 및 별표 4는 예산지출을 위한 예산집행의뢰서에 구입품목 및 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업무협의내용 및 대상을 필수기재사항으로 명시하도록 규정
- 신용회복위원회는 '15.11월 ~ '18. 4월 기간 중 전체 업무추진비로 총 236,920천원을 집행하였고, 그 중 대외적 업무추진비\*는 113,239천원을 집행

\* 유관기관과의 대외 업무 추진과 관련한 제반 비용(간담회, 선물, 경조사비 등)

- 동 기간 중 대외적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의 약 37%에 해당하는 42,608천원이 물품구매에 집행되었으나, 구매 목적이 “유관기관 회의”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구입품목, 대상, 업무협의내용 등을 기재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규정상 법인카드로 결제시 별도 목록이 표시된 지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매 물품의 구체적인 제품명, 단가, 수량 등 구매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대외적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물품구입의 경우 구체적인 구입품목 및 대상 등을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개선요구)

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인원 정확성 개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서, 퇴직금규정 제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부채 과대계상)
- '17년도에 입사한 총 17명의 경우 근로기간이 입사 후 1년 이내이므로 퇴직금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퇴직금규정 제3조(퇴직금 지급)

②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내역 및 금액>

회계일자	설정내역	'17년 전직원 설정 금액	'17년 입사자 설정금액
2017년 12월 29일	2017년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125,558,812원	33,814,660원

⇒ 해당 연도의 입사자, 퇴사자, 급여지급 대상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의 인원 현황과 비교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인원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사정요구)

## ⑥ 회계규정 정비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회계규정 제3조(회계원칙) 1호에서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 유형자산 및 임차보증금 등 일부 항목의 경우는 현금주의 회계원칙 등 일관되지 않은 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당기 및 전기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음

### <회계처리 비일관성 사례>

항목	2017년 이후 취득 (발생주의 원칙)	2016년 이전 취득 (현금주의 원칙)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관련 자산계정에 계상 후, 매 회계연도 말에 감가상각비를 인식	취득원가를 관련 자산계정에 계상함과 동시에, 동액을 비용 및 자본잉여금(고정자산출연금)에 계상 후, 매 회계연도 말에 감가상각비와 자본잉여금을 상계
임차보증금	취득원가를 관련 자산계정에 계상 후, 회수하는 경우 관련 자산계정에서 감액처리	취득원가를 관련 자산계정에 계상함과 동시에, 동액을 비용 및 자본잉여금(고정자산출연금)에 계상 후, 회수하는 경우 고정자산조정금을 감액처리 (2017년 재무제표에서 임차보증금 회수금의 경우 이익잉여금에 계상)

- 또한, 재무제표 주석에서 위원회의 회계규정에 따라 동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고 공시하고 있지만, 회계규정의 관련 조문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동 회계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2017년 재무제표 주석>**

항목	내용
2. (7) 고정자산 출연금	<b>위원회는 회계규정에</b> 따라 임차보증금, 기타회원권 및 유형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원가를 관련 자산계정에 계상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의 고정자산출연금의 과목으로 자본금에 계상하고 있으며, (이하 생략)
4. 유형자산	<b>위원회는 회계규정에</b> 의하여 2017년 이전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출연금과 상계하고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109,830천원입니다.
5. 고정자산 출연금 증감내역	고정자산출연금은 임차보증금 감소에 따른 일시적 회수금으로 향후 동 재원으로 고정자산(임차보증금) 취득할 예정입니다.
9. (1) 결손금처리 계산서	<b>동건 위원회 회계기규정에</b> 따라 사무실임차보증금 회수금을 이익잉여금에 계상함

⇒ 체계적이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상황에 맞는 내부 회계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권고)

## 다 고유업무

### ① 변제금 선납 및 중도완제자에 대한 불합리한 소액금융 대출 금리제도 개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미납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채무조정상환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

<소액금융 지원한도 내역(소액금융시행세칙 제8조)>

채무조정 상환기간	대출한도	이율(대출금리)		상환기간
		일 반	금융취약계층*	
6~8개월	최대 2백만원	연 4.0%	연 2.8%	최대 5년
9~11개월	최대 3백만원			
12~23개월	최대 10백만원	연 3.8%	연 2.66%	
24~35개월	최대 15백만원	연 3.5%	연 2.45%	
36개월 이상		연 3.0%	연 2.1%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 한편, 소액금융업무처리기준\*은 변제금을 선납하거나 중도완제 하는 경우 변제금이 선납된 기간을 채무조정상환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채무조정 기간 중에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성실하게 변제금을 선납하거나 중도완제 하는 경우 추후 생활안정 목적 등으로 소액대출 신청 시 금리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

\* 4. 대출금리 및 이자계산 3) 이자율 적용을 위한 채무조정 상환기간 산정 시 유예이자 납입기간 및 변제금 선납기간 제외(중도완제자 동일기준 적용)

\*\* 15.11.01.~18.03.31. 차입신청건 49,176건 중 529건, 평균금리 차이 0.70%

⇒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가 동 기간 중에 발생한 여유 자금으로 성실하게 변제금을 선납하거나 중도완제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통보)

## ② 주민등록번호 처리관련 업무 개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 그러함에도 위원회 전국 31개 지부에서는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관련 업무를 취급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의 개인식별번호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개인 동의 없이 징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17년도 채무조정 건수 : 103,277 건

17년도 소액대출 건수 : 20,381 건

⇒ 채무조정 및 소액대출 등 관련 업무 취급 시 가족 또는 동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서류 징구, 관련 지침 마련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개선요구)

## 라 IT관련 업무

### ① 정보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시행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31개 지부 등과 채무조정 등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
- 하지만 「서민금융총괄기관 설립\*」 발표(2013년) 이후로 핵심 전산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유보된 상태
  - \*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신복위, 행복기금,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는 총괄기관 설립방안 발표
- 이로 인해 2005~2006년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함에 따라 2014~2017년중 연평균 13.8회의 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

<신용회복위원회 전산장비 도입 현황>

도입연도	경과기간	수량	비율	비고
2002년~2006년	11년 이상	22	39%	내용연수(6년) 경과
2007년~2012년	6년 이상	21	37%	내용연수(6년) 경과
2012년~2017년	6년 이하	14	24%	

- 위와 같은 장비노후화 문제가 2015년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시 지적(정보시스템 성능 향상 조치 필요)되어 일부 장비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는 부족한 상황

<2015년 이후 노후장비 개선 사항(단위 : 천원)>

집행일	지출내역	예산
'16.8.10	백본스위치 교체	49,500
'16.12.23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81,137
'17.3.10	외부방화벽 교체	26,400
'17.4.13	상담센터시스템 재구축	895,400

- 또한, 노후장비 교체,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 수행이 필요하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

<2018년 IT관련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내역	예산
유지보수료	통합유지보수 비용(H/W, S/W, 인건비, 상담센터)	1,473
소프트웨어	신용정보 분리보관 및 데이터 암호화 등	48
전용회선료	지부 등 인터넷회선료 및 KT 전산센터 임차비용 등	734
지급수수료	금융보안원 사원회비 및 취약점 점검 비용	88
전산시스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및 대외계시스템 분리 등	1,836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여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필요(개선요구)

## ② 신용상담사 시험응시료 관련 전산개발 미활용

- 신용회복위원회는 2010년부터 신용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6.10.4.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상담사 자격에 대하여 공인을 받았음

\* 개인의 재무상태 및 부채구조를 파악하고 신용문제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고 신용유의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관리와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회생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

- 그 동안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별도의 검정료(응시료)가 없었으나 국가공인 민간자격 전환을 계기로 자격시험 검정료를 받기로 하고('17.2.21.) 시험응시료 전자결제서비스(PG) 관련 전산개발을 완료('17.6.14.)

업체명	개발내용	금액(천원)	계약기간
(주)트루관	PG사 결제모듈 연동, 관리자 화면 수정	5,500	'17.4.1.~5.1.
(주)지앤비 소프트	응시료 납부, 정산관리 등 회계 시스템 연계	18,700	'17.3.15.~5.15.

\* 제8회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및 제1회 완화검정시험 종합계획(안)에서 응시 수수료를 결정하고(정기검정 4만원, 완화검정 1만원), 2017.3.6. 신용상담사 자격관리규정을 개정(응시수수료 징수 및 면제 대상 신설)

-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는 검정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겨우 3개월이 지난 '17.5.30. 검정료(응시료)를 받기로 한 결정을 번복함에 따라 24,2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시험응시료 전자결제서비스(PG)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자격시험 활성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유지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시스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며, 현재도 동 시스템 중 검정료 징수관련 부분은 사용되지 않지만, '시험 신청접수' 및 '합격자 관리' 등관련 부분은 현재도 사용중이며, 향후 1~2년 뒤에 징수 관련 부분도 정상 사용 예정이므로 예산낭비 사례로 보기는 무리라는 주장

⇒ 예산 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진행시 그 필요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기관주의)

## 마 계약관련 업무

### ① 사업부서 자체계약 부적정

- 신용회복위원회 계약규정 제3조(계약사무의 담당자)제2항\*은 계약의 체결은 계약담당자(재산관리팀장)가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사업부서장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원인행위의 사업부서로부터 계약체결을 의뢰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계약, 계약의 성질과 기술상 해당사업부서에서 담당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계약은 해당사업부서장이 직접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계약에 관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부서장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15.11.1 ~ '18.3.31. 기간중 1천만원 이상 계약 건 138건 중 재산관리팀장이 각종 홍보용품 및 광고 등 대부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그 중 14건은 유사한 홍보용품 및 광고 등의 계약임에도 계약규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해당사업부서장이 계약담당자로 계약을 체결

< 1천만원 이상 사업부서장이 체결한 계약 현황(15.11.1~18.3.31) >

	계약금액(원)	계약담당자	횟수(건)
홍보용품 구매	87,598,700	홍보팀장	5
광고계약	399,775,000	홍보팀장	5
외부감사계약	26,000,000	회계팀장	2
단체보험가입	36,077,512	인사팀장	2
계			14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토록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사업부서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 (통보)

##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보수 제도관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방식 다양화 및 외부 면접위원 참여 확대 필요</li> <li>■ 사무국장 및 본부장 보수결정과정 투명성 제고 필요</li> <li>■ 신용상담 기능강화 등을 위한 조직 보강 등 조치 필요</li> </ul>	<p>통보</p> <p>통보</p> <p>통보</p>
예산집행/ 회계처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li> <li>■ 해외연수제도 개선 필요</li> <li>■ 업무용 차량 및 운전대행서비스 운영 개선 필요</li> <li>■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li> </ul>	<p>기관주의</p> <p>개선요구</p> <p>개선요구</p> <p>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인원 정확성 개선 필요</li> <li>■ 회계처리 원칙 정비 필요</li> </ul>	<p>시정요구</p> <p>권고</p>
고유업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제금 선납 및 중도완제자에 대한 불합리한 소액금융대출 금리제도 개선 필요</li> <li>■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업무 개선 필요</li> </ul>	<p>통보</p> <p>개선요구</p>
IT업무관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시스템 안정성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시행 필요</li> <li>■ 신용상담사 시험응시료 관련 전산개발 미활용</li> </ul>	<p>개선요구</p> <p>기관주의</p>
계약업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서 자체계약 부적정</li> </ul>	<p>통보</p>

###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징계 또는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시정요구 : 2개월 이내에 조치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